



재해개요

2024. 12. 00.(목) 13:24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000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해 철판 코일 묶음을 코일 적재대의 2단에 적재한 후 결속된 철밴드를 절단 하던 중 코일이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1명 사망



발생원인

- ▶ 코일 전도방지조치 미흡
- 코일을 결속하고 있는 밴드를 절단했을 때 기울어지며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나 미조치
- ▶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
- 적재대에 세워놓은 코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
- ► 작업계획서 미작성
 - 코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`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

예방대책

- 1 코일의 전도 및 낙하방지조치 강화
- 결속 밴드의 절단작업 등 코일 취급 작업 시 코일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어 적재할 수 있는 적재대를 사용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도 ` 낙하방지조치 실시
- 2 작업계획서 작성
 -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자들이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고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달비계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` 감독 철저
- 3 작업계획서 작성
 - 코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`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

※본마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